

**기부행위,
주는 것도 받는 것도
요구하는 것도
할 수 없습니다!**



제한기간 : 2022.9.21.(수) ~ 2023.3.8.(수)

주체	제한 내용
후보자 그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·단체·시설	조합장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 금지
누구든지	해당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금지 (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행위 포함)
	해당 선거에 관하여 기부를 받거나 기부 의사 표시 승낙 금지
	기부행위 일체에 대하여 지시·권유·알선·요구 금지

※ '후보자'에는 '후보자가 되려는 사람'을 포함합니다.

**정직한 선거,
신뢰받는 조합의
시작입니다.**

**선거관련 금품 받으면
과태료 최고 3천만 원**

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
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

제공받은 금액, 음식물·물품 또는 그 가액에
상당하는 금액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고 자수하면
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.



**위반행위 신고하면
포상금 최대 3억 원**

포상금은 익명으로 수령 가능

신고자의 신분은 법에 의해 철저히 보호됩니다.



조합장선거 법규안내
및 위반행위 신고
전국 어디서나

1390

**제3회
전국동시조합장선거**
2023. 3. 8. (수) 오전 7시~오후 5시



**깨끗한 경쟁과 현명한 선택은
희망찬 조합으로 가는 길!**

중앙선거
관리위원회
누리집 바로가기
nec.go.kr



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주요 선거 일정



후보자등록 신청
2023.2.21.(화) ~ 2.22.(수)
매일 오전 9시 ~ 오후 6시

01

선거인명부 열람
2023.2.22.(수) ~ 2.25.(토)

02

선거운동기간
2023.2.23.(목) ~ 3.7.(화)

03

**투표안내문 발송
(선거공보 동봉)**
2023.2.28.(화)까지

04

선거일 투표
2023.3.8.(수)
오전 7시 ~ 오후 5시

05



오늘의 깨끗한 한 표,
내일의 건강한 조합을
만듭니다.



투표일시
2023. 3. 8.(수)
오전 7시 ~ 오후 5시

투표장소
투표안내문 참조

투표할 때 필요한 준비물
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
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
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, 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 등

투표절차

STEP 01
신분증 제시
및 본인확인
(본인확인기에 손도장
또는 서명)

STEP 02
투표용지
받음

STEP 03
기표소에서
기표한 후
기표내용이 다른
사람에게 보이지 않게
투표지를 접음

STEP 04
투표지를
투표함에
넣음

선거운동 안내



선거운동 가능자 : 후보자
선거운동기간 : 2023. 2. 23.(목) ~ 3. 7.(화)

선거운동 방법

<p>선거공보 투표안내문과 함께 선거인에게 발송</p>	<p>어깨띠·윗옷·소품 어깨띠, 윗옷을 착용 허거나 소품 이용</p>
<p>선거벽보 조합의 주된 사무소, 지사사무소의 건물 또는 게시판 첨부</p>	<p>정보통신망 해당 조합이 개설·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·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게시 또는 전자우편 전송</p>
<p>전화 직접 통화 또는 문자메시지 전송 (문자 이외 음성, 화상, 동영상 등은 제외) ※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의 할 수 없음</p>	<p>명함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위한 명함을 선거인에게 직접 주거나 지지 호소 ※ 길이 9cm, 너비 5cm 이내</p>